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재)영산문화재단 영산양재홀(이하 “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에 있다.

제2조 (대관범위)

홀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 (대관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이나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홀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3. 대관은 목적에 따라 수시대관, 시간대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 (대관신청)

1. 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홀에 제출해야 한다.

홀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요구할 경우 대관자는 제출해야 한다.

2. 대관 계약 후 추가 시설 사용 신청은 부대시설신청서로 제출해야 한다.

3. 대관자는 피아노 사용 시 조율을 원칙으로 하되, 조율을 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홀이 책임지지 않는다.

4. 신청서 양식은 홀에서 정한다.

5. 대관신청 시 대관자는 대관규약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관승인)

홀은 대관신청서 확인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심사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료)

1. 대관료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대관자는 대관 승인 시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홀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연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시간대관의 경우 대관자는 홀에서 통보한 기간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4. 대관자가 납부한 위 2항의 계약금은 대관신청 취소 시 반환이 불가하다.

5. 대관자가 계약금을 포함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 후 개인(단체)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서면상으로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본시설 대관료의 50%가 반환되며, 사용일전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관신청 취소 시 대관료 전액이 반환 불가하다.

제6조 (공연시간, 리허설시간)

1. 공연시간은 대관자와 홀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리허설 2시간30분, 공연 2시간(퇴실포함)으로 진행되며, 리허설은 공연 30분 전 마감된다.

(단, 초과사용시간은 시간대관 비용으로 산출되어 추가 납입해야 함.)

제7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1. 대관자가 제출한 대관신청서의 내용이 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2.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홀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4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홀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때

4) 대관 규약을 위반할 때

제8조 (내용 및 일정 변경금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 내용과 일정을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대관자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홀이 판단하였을 때 대관 내용 변경이 어려울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홀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대관자가 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손해액은 홀에서 정한다.

3. 홀은 대관 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4. 대관자는 대관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 (입장권의 발행 및 관리)

1. 대관자의 입장권 발행은 홀과 사전에 협의한다.

2.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1) 본 입장권은 해당 일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2) 공연장 내에는 꽃다발 및 음식물 등 반입이 제한됩니다.

3)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미취학 아동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단, 일부 공연 제외)

5) 주차는 인근유료주차장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관자는 해당공연에 대한 티켓판매와 예매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11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홀의 CI를 사용해야하며 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연 진행 협조)

1. 대관자는 공연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대관자는 사전에 협의되어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은 적어도 공연 개시 일주일 전까지 홀과 협의해야 한다.

3.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관리와 공연진행에 관한 책임은 홀이 가진다.

4.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홀 관계자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5. 대관자는 공연 포스터 및 프로그램을 홀에 리허설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로비 및 기타공간에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할 경우 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공연장 내에는 화환, 현수막 등을 일체 반입할 수 없다.

제13조 (공연취소)

대관자는 임의적으로 공연을 취소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홀에서 공연 진행을 보류 및 검토하여 결정한다. 대관료는 환불 불가하며 대관 일정을 변경 및 조정하도록 한다.

제13조 (적용규정)

본 규약은 홀과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